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출연월일 : 2006년 8월 2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안 제1조, 제2조, 제5조)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안 제4조)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변경(안 제9조 ~ 제14조)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안 제1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를 “ 또는 다른 법률 ”로 한다.

제2조제3호중 “ 「지방재정법」 제64조 ”를 “ 「지방재정법」 제77조 ”로 한다.

제4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
으로의 예치

제5조제3항중 “ 「지방재정법」 제29조 ”를 “ 「지방재정법」 제34조 ”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0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기금관련 전문가
2. 공인회계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이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용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 of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를 제16조로 하며, 동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또는 다른 법률.....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생략)</p> <p>3. “도 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p> <p>4.(생략)</p>	<p>제2조(정의)..... 1. ~ 2.(현행과 같음) 3..... 「지방재정법 제77조..... 4.(현행과 같음)</p>
<p>제4조(용도) (생략)</p> <p>1. ~ 4.(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p>	<p>제4조(용도) 1. ~ 4.(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의 예치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p>

현행	개정안
<p>제5조(운용·관리) ①~②(생략)</p> <p>③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 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p> <p>④(생략)</p>	<p>제5조(운용·관리) ① ②(현행과 같음)</p> <p>③..... 「지방재정법」 제 34조</p> <p>④(현행과 같음)</p>
<p>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p> <p>2. 용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p> <p>3.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 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4.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 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p> <p>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위원회는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p>	<p>제9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통합 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 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p>

현행	개정안
<p><신설></p>	<p>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도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위원 의 수는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관련 전문가 2. 공인회계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p>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이는 예산담당관이 된다.</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 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용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 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 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1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 110(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1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현행	개정안
<p>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2조(시행규칙) (생략)</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협력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기금은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

유자금을 협력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 자치단체의 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자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